

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

검 토 보 고

이 예산안은 2003년 5월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5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I. 예산안 규모(사회산업국)

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과 별	2003년제1회 추경예산안(A)	2003년도 당초예산액(B)	증 감 액 (C=A-B)	비 고(%) (B/C)
합 계	47,521,406	43,685,933	3,835,473	8.7
사회복지과	30,025,937	28,525,483	1,500,454	5.2
환경보호과	17,495,469	15,160,450	2,335,019	15.4

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3년제1회 추경예산안(A)	2003년도 당초예산액(B)	증 감 액 (C=A-B)	비 고(%) (B/C)
합 계	761,973	705,422	56,551	2.9
의료보호	562,117	525,322	36,795	7.0
영세민생활안정기금	199,856	180,100	19,756	10.9

II. 세출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

□ 사회복지과

○ 사회복지

- 민간이전(민간경상보조) -----△233,140천원
- 시설비및부대비(보훈회관 개보수)----- 27,000천원

○ 저소득주민보호

- 민간이전----- 726,860천원
 - 의료및구료비(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) 500,000천원
 - 민간경상보조(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) 2,700천원
 - 민간위탁금(과목조정 2건) 224,160천원

○ 가정복지

- 민간이전(민간경상보조)----- 61,884천원
- 시설비및부대비(노인복지회관 신축)----- 800,000천원
- 민간자본이전(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)----- 71,600천원
- 민간자본이전(이천2리 경로당 신축외 2건)----- 144,000천원

○ 여성복지

- 민간이전(성폭력 상담소 운영)----- 27,486천원

○ 유아복지

- 민간이전(민간경상보조)-----△57,188천원

○ 청소년복지

- 연구개발(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비)----- 30,000천원
- 민간이전(청소년보호단체 지원)----- 15,000천원

□ 환경보호과

○ 환경자원

- 일반보상금----- 42,150천원
 -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36,750천원
 -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5,400천원
- 민간이전(청소업체 쓰레기 처리 사업비) ----- 300,000천원

○ 환경시설

- 시설비및부대비----- 122,000천원
 -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 22,000천원
 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 100,000천원
- 민간이전(민간위탁금)----- 1,866,669천원
 -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대행비 1,854,539천원
 -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대행비 12,130천원
- 시설비및부대비(소각장주변 환경영향평가 용역)--- 22,500천원
- 민간자본이전----- 100,000천원
 - 낙하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40,000천원
 - 내포3리 하수도 설치공사 60,000천원

Ⅲ. 검토의견

-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.
-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7,521,40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3,685,933천원의 8.7%인 3,835,473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.
- 참고적으로,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안 47,521,406천원은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총 292,767,428천원의 16.2%에 해당되는 규모임.
-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는, 사회복지과 예산 30,025,937천원(63.2%), 환경보호과 예산 17,495,469천원(36.8%)임.
- 부서별로 주요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
-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 중 임차료 200,000천원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아파트 임차를 위해 계상된 것으로 당초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으로 편성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되었는바, 향후 예산편성운영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민간이전 예산 233,140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국도비 부담 내역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80,873천원, 도비148,461천원, 시비 3,806천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음.
- 자체사업예산중 시설비 27,000천원은 금촌2동 소재 보훈회관의 개보수를 위해 계상된 것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된지 15년이 경과되어 부분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임.
- 저소득주민보호예산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500,000천원은 관내 3,103가구 4,973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이며,
- 민간위탁금중 기초생활보장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124,160천원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간병인사업과 집수리사업, 세차사업단등 3개 사업 운영을 위해 계상된 것임.
- 가정복지예산중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62,300천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도비로 편성되었음.
- 민간자본보조예산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1,600천원은 파주읍 연풍리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도비와 시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, 이천2리와 도내2리, 금촌3통 등 3개소의 경로당 신축을 위해 144,000천원이 계상되었음.

- 여성복지예산으로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 27,486천원이 편성되었으며,
- 유아복지예산중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85,316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고, 보육자재 현대화 예산 26,400천원은 유아교육의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계상되었음.
- 학술용역비 30,000천원은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것으로 동 예산은 불법묘지 발생억제는 물론 화장문화 유도과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.
-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자원예산중 기타보상금 36,750천원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수거율이 저조한 폐비닐에 대하여 수거유인 효과가 예상되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.
- 민간위탁금 800,000천원은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 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업체 처리비를 증액 계상한 것임.
- 환경시설예산중 시설비 22,000천원은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,
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 100,000천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해 그래픽 디자인 채색을 위해 계상되었음.

- 민간위탁금중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대행비 1,854,539천원은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 원가계산용역에 의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에 따른 부족분이 계상된 것이나 정확한 산출내역이 명시되지 않아 증액사유가 불분명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대행비 12,130천원도 같은 사유로 증액 계상되었는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.
- 민간자본보조 100,000천원은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낙하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마무리와 내포3리 하수도시설공사를 위해 계상되었음.
- 다음,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
2003년도 제1회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562,11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25,322천원의 7.0%인 36,79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.
- 추경 재원 대부분이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지급을 위한 국도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
2003년도 제1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총 199,85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80,100천원의 10.9%인 19,75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.
- 추경재원은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,756천원으로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위해 편성되었음.
- 이상으로, 사회산업국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
- 대부분의 복지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법적·의무적 경비 등이 반영되었고 경로당 신축과 복지시설 개보수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추경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그러나, 일부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